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16
----------	-------

제출년월일 : 2014. 2.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 수수료를 표준 수수료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표준 금액과 상이한 종목의 수수료를 표준금액에 맞도록 개정
 - 총 21종목 (인상 1건 인하 14건 신설 6건)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14. 1. 2 ~ 1. 22)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라. 2014년 제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4.2.11)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9조에 따라”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를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로 한다.

제2조 중 “수수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의1을 제4조의2로 한다.

제4조의2(종전의 제4조의1) 전단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를 “구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를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다만 구청장”을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2통이상 수수료)”를 “(2통 이상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중 “제3조 별표에 규정한 사항으로서”를 “별표에 규정한 사항 중”으로, “2통이상 청구”를 “2통 이상 신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참

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따른”을 “따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을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으로, “반복적인 상업적”을 “반복적이고 상업적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청구”를 “신청”으로, “청구자”를 “신청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단, 제3조의”를 “다만,”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66종)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72종)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공연장업 등록 신청	1건	<u>10,000원</u>	
(2)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u>5,000원</u>	
(3) ~ (4) (현행과 같음)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u>50,000원</u>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	1건	<u>15,000원</u>
(7)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건	<u>20,000원</u>
(8)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1건	<u>5,000원</u>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u>20,000원</u>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u>5,000원</u>
(11) (생 략)		
(12)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u>5,000원</u>
(13) (생 략)		
(1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u>5,000원</u>
(15) (생 략)		
(16)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등록 신청	1건	<u>5,000원</u>
(17) (생 략)		
(1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u>5,000원</u>
(19) (생 략)		
(20)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u>5,000원</u>
(21) ~ (30) (생 략)		
(31)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u>20,000원</u>
(3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1건	<u>10,000원</u>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생 략)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 신고	1건	<u>5,000원</u>
(3) ~ (23) (생 략)		
(24)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양수신고	1건	<u>10,000원</u>
(25) ~ (36) (생 략)		
(37) 영화업 신고	1건	<u>20,000원</u>
(38) 영화업 변경 신고	1건	<u>10,000원</u>
(39)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u>5,000원</u>
(40)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u>4,000원</u>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 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p> <p>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p> <p>제4조의1(납부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p>	<p>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p> <p>제1조(목적) ----- ----- 제139조 에 따라 -----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 액에 ----- -----.</p> <p>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 -----.</p> <p>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p> <p>제4조의2(납부방법) ----- 구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 ----- .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p>

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 표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별표에 규정한 사항 중 2통 이상 신청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1. 2. (현행과 같음)
3. 제6조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따라 사람이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9. (생략)

1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일반 동산·문화재를 등록신청 및 접수하는 증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증명은 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전액 반환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특수임무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
--- 사람이 -----

9. (현행과 같음)

<삭제>

② -----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

-----.

제7조(징수시기) ① -----
----- 신청-----
신청자-----.

② -----

한다. 단, 제3조의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다만,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시행규칙) ----- 시행에

-.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신·구대비표

구분/종목	단위	수수료액 전	수수료액 후	비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66종	72종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공연장업 등록 신청	1건	50,000원	10,000원	
(2)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5,000원	5,000원	
(3)~(4) (생략)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60,000원	50,000원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	1건	30,000원	15,000원	
(7)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건	30,000원	20,000원	
(8)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원	5,000원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30,000원	20,000원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변경등록 신청	1건	15,000원	5,000원	
(11) (생략)				
(12)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5,000원	
(13) (생략)				
(1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5,000원	
(15) (생략)				
(16)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5,000원	
(17) (생략)				
(1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10,000원	5,000원	
(19) (생략)				
(20)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10,000원	5,000원	
(21)~(30) (생략)				
(31)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신설
(3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1건		10,000원	신설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생략)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5,000원	
(3)~(23) (생략)				
(24)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및 양도·양수신고	1건	2,000원	10,000원	
(25)~(36) (생략)				
(37) 영화업 신규 신고	1건		20,000원	신설
(38) 영화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신설
(39)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신설
(40)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신설